

# [범일 퀸즈이즈카운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각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추천)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건본주택 신청 시 10:00 ~ 14:00)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 총 268세대 중 특별공급 137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27세대)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61	61.8564	27.0469	88.9033	45.6218	134.5251	54	5
	62	62.0058	27.2634	89.1198	45.7320	134.8518	53	5
	76	76.9923	33.1595	95.0159	56.7852	151.8011	27	3
	84A	84.9060	37.0866	98.9430	62.6219	161.5649	54	5
	84B	84.9645	36.1049	97.9613	62.6651	160.6264	27	3
	84C	84.9738	36.5774	98.4338	62.6719	161.1057	26	3
	84D	84.9151	36.9003	98.7567	62.6286	161.3853	27	3
	합 계							26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추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sup>2</sup>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구 분(약식표기)	61	62	76	84A	84B	84C	84D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5)	1(5)	1(5)	1(5)	1(5)	1(5)	7(35)
	중소기업근로자	4(20)	4(20)	2(10)	4(20)	2(10)	2(10)	20(100)
	소계	5(25)	5(25)	3(15)	5(25)	3(15)	3(15)	27(135)

(※괄호(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II

## 공급일정 안내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년 11월 08일(금)	• 일간신문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4년 11월 18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8: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 • 견본주택 신청 시(10:00~14:00)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4년 11월 26일(화)	• 당첨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예비당첨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사업주체 홈페이지(추후안내)
계약 체결	2023년 12월 09일(월) ~ 2023년 12월 11일(수) 3일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78-5) • 시간 : 10:00~16:0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방문접수 구비서류 안내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방문접수 구비서류 안내

서류 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 서류 일체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b> )
○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4.11.0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제출 시 미비서류 발생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서류 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위임장 위임용
○	위임장	청약자 대리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위임장 서명용(서명대체 가능)

※ 청약자 본인 외 모두 제3자 대리인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희망 시 추가 서류

신청 자격	구비서류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청약자 또는 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청약자 또는 그 세대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청약자 또는 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 임신진단서

※ 최하층 우선배정에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또는 ②에게 우선배정합니다.

IV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이미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요건, ② 청약자격요건 및 ③ 기관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 다른 분양주택에 부적격으로 인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에서 제외됩니다.</li> </ul>
①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공급에 한하므로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②	

<p>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각 기관별 추천자는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을 경우 청약통장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③ 기관별 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기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50%;">관련법령</th> <th style="width: 30%;">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7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td> </tr> <tr> <td>장애인</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17호</td> <td>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상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제6호</td> <td>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23호</td> <td>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body> </table>	구 분	관련법령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7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17호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제6호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23호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구 분	관련법령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7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17호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경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제6호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중 제35조 제1항 제23호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p>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2023.05.10.)됨에 따라 “<b>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b>”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11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 산정은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li> <li>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 분양권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ul>																				

##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입주자포함) 및 동·호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2020.02.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한국부동산원 수행)</li> <li>•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li> <li>•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은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 청약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로 인해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까지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은 당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사업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두어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li> <li>•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최대 500%)를 선정합니다.</li> <li>•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과 동일한 시일에 발표됩니다.</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접수(서류제출 없음)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신청(10:00~14:00), 현장 접수 시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형별 공급 세대 수 및 각 기관으로부터 수신 받은 대상자(예비당첨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한국부동산원에 통지합니다.</li> <li>• 예비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형에 타 유형의 특별공급 미달시 예비자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li> <li>•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됩니다.</li> <li>• 기관추천 대상자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형은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예비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 지위는 무효</li> <li>- 특별공급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공급 예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특별공급 예비가 선행)</li> <li>- 다만,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순번으로서 지위를 인정합니다.</li> </ul> </li> <li>• [범일 퀸즈이즈카운티]에 대한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확정되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범일 퀸즈이즈카운티]의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동구)는 비규제지역이므로 제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li> <li>• 개인에 따라 주택(분양권을 포함) 소유 여부 및 개인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등이 상이하므로 부적격으로 인한 계약 불가, 중도금 대출 불가 등에 대해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li> </ul>

## VI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건본주택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78-5번지
  - 현장위치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9번지
  - 분양문의 : 051-636-8289
  - 홈페이지 : [www.퀸즈이즈카운티.com](http://www.퀸즈이즈카운티.com)
  - 시행·시공·위탁자 : (주)대성문 / 리즈건설(주) / 이채건설(주)
  - 시행 수탁자 : (주)무궁화신탁
- ※ 본 안내문 및 이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입주자모집공고, 분양홍보물 등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II 현장 위치도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